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2612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기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1136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A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자 매매계약 및 2018. 4. 20.자 매매계약을 163,06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3,06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이하 이 항목에서는 생략한다) 제4면 제5행의 “23호증의 각 기재”를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7행의 “603,063,000원”을 “583,740,120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을 6호증의 기재에”를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163,063,00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163,063,000원(=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 28.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와 일면식도 없었다가 피고의 친구 소개로 알고 금전을 대여한 관계에 불과하여 A의 신용 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방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가 시가에 비하여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9. 4.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2017. 11. 2. A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5,000만 원(지급기일 2018. 2. 28.)]의 약정 외에 근저당권의 인수 등은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매예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의 액수를 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쳤다고 자인하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5억 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4억 8,000만 원인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인 5억 8,300여만 원보다 상당히 저렴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한 점(매매계약서를 법무사가 작성한 것만으로 통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일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대물변제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배우자와 거주하였다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그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